인사혁신처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2022. 3. 15.(화) 10:00	배포 일시	
담당 부서	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	책임자	과 장 강수진 (044-201-8131)
		담당자	사무관 김진경 (044-201-8134)

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

- 보상 근거 법적으로 보장해 국가 책임 강화 -

□ **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**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○ **인사혁신처**(처장 김우호)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**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됐다고 밝혔다.

□ 기존에는 **행정규칙**인 '공무상 질병 판정기준'(인사처 예규)을 통해 **직장 내 괴롭힘**으로 인한 **공무상 재해를 보상**해왔다.

○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**부상·질병·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**을 담은 **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**한다.

○ **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**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**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**하는 것이다.

【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개정안 주요 내용 】

구 분	현재	개선
직장 내 괴롭힘 상향 입법	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관련 규정을 **인사처 예규에 명시**	**산업재해와 동일하게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구체적 규정 명시**

□ **김우호 인사처장**은 “**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**를 입은 **공무원과 유족**에 대한 **적극적인 보상**을 통해 앞으로도 **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**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